

양 천 구

주 의 요 구

제 목 보조금 예산 교부 확인 소홀
관 련 기 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과
내 용

1. 업무개요

■■■과는 「지방회계법」,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 수령·교부 등 업무를 하고 있다.

2. 관계 규정 및 판단 기준

「지방회계법」 제25조 및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수입은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직접 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며,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국시비 보조금 등 간주처리 절차 안내(양천구 기획예산과-424, 2022. 1. 12.)공문에 따라 간주처리 예산집행 시 보조금 수령확인 후 지출(징수결의 이행)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과는 ‘2022년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사업’을 운영하면서 시비보조금이 교부되는 경우 보조금 수령을 확인한 후 징수결의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운영비 부족분에 대하여 시비보조금을 추가 교부요청한 건과 관련하여 서울시에서 보조금 교부 문서를 시행하였음에도 실제 보조금이 입금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이를 간주처리 하여 예산을 집행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후 ㉡과는 차년도에 해당 보조금에 대해 재교부를 요청하였으나, 서울시에서는 이호조 마감 등의 사유로 추가 교부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결과 구비 1,148천원을 과다 지출하게 되었다.

[표] 보조금 집행 소홀 내역

사업명	보조금		입금일자	간주처리 요청일	비고
2022년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사업 (기간제근로자보수)	1차	60,477천원	2022.2.8.	2022. 2. 17.	
	2차	1,300천원	미입금	2022. 11. 25.	미입금되었음에도 간주처리 후 예산집행 (추가교부요청일 : 2023. 2. 8.)
	'22년 간주예산 총 61,777천원 (입금액 : 60,477천원) / 지출액 61,625천원 (입금액 대비 1,148천원 과다 지출 - 구비는 예산에 미편성)				

4.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 의견

㉡과는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사업 운영 보조금 부족분에 대해 서울시에 시비보조금을 추가 교부요청하였고, 서울시에서 보조금 교부 문서는 시행하였음에도 실제 보조금은 미입금된 상태로 보조금 간주처리 승인이 되었고, 급여 지급의 시급성 등을 사유로 보조금 징수 미결의 상태에서 구비로 인건비를 지급하게 되었으며, 서울시에 누락된 보조금 입금을 재요청 하였으나 e호조 마감 사유 등으로 입금되지 않았다. 보조금에 대한 예산 편성 및 간주처리 과정, 예산 집행 시 보조금 수령 여부에 대한 확인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5. 조치할 사항

㉡과장은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을 실시하기 바라며, 보조금 수령 및 징수결의·간주처리 등 보조금 집행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관리·감독하시기 바랍니다. (주의)